

2023년도 「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」 설명회

< 개 요 >

□ 설명회

- 일 시 : 2022년 10월 7일(금) 14:00
- 장 소 : 농업기술센터 농촌생활문화관 2층
- 참석대상 : 12명
 - 관내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및 친척 초청 할 결혼이민자
- 주요내용 : 고용주 준수사항, 계절근로자 근로기준, 제출서류 안내 등

□ 향후 추진일정

- 외국 지자체(외국, 중앙부처)와 MOU체결 : 2022년 11월
- 운영 계획 수립 및 법무부 승인요청 : 2022년 12월
- 계절근로자 농가 사업장 근무 : 2023년 3월 ~ 7월



함 안 군
(농업정책과)

2023년도 「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」 설명회

□ 사업목적

-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(도)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지원사업, (도)귀국지원사업
- 사업기간 : 2023년 1월 ~ 12월(상·하반기 1회씩)
- 사업대상자 : 농업경영가구, 농업법인·조합(영농조합·법인, 농업회사법인)
- 계절근로자 : MOU 체결 외국 지자체주민(만30세이상 55세 이하),
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4촌이내 친척(만19~55세 이하)
- 체류기간: 입국일로부터 3개월(C-4-1, C-4-2) ~ 5개월(E-8-1, E-8-2)
- 지원내용
 - 외국인 계절근로자 코로나19 격리시설 비용 및 산재보험 가입
 - 마약검사, 기본 건강검진, 외국인 등록비, 방역물품
 -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·출국 위한 국내 이동 교통비 지원
 - 성실근로자에 대한 편도 항공비 지원
- 선발조건: 범죄사실증명 제출, 결핵·질병검사, 코로나19 음성확인,
백신접종 완료자

□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

- 적절한 주거환경 제공(숙소, 생활 필수 물품 구비)
 - 컨테이너, 비닐하우스, 창고 개조 등은 숙소 제공 불가
 - 냉난방 설비 및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, 취사 도구(소화기, 화재감지기 포함), 인터넷 제공
 - 숙소(침실, 화장실 포함) 내부 잠금장치가 있을 것
- 고용주 임금 지급 후 숙식비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징수
- 농가배정 시 통장개설,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등록, 마약검사 등 추진
- 계절근로자 고용에 따른 산업재해보험 고용주 의무가입
-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시 비용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부담

□ 계절근로자 근로기준

- 근로시간: 1일 8시간 근무 원칙(표준근로계약서 작성)
 -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 휴식시간 부여(근로시간 미포함)
 - 1일 최대 12시간 이상 근로 금지
 - 연장야간 근무 시 최저시급의 150% 적용하여 초과수당 지급
 - 당사자 간 합의로 휴일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할 수 있음
 - 매 30일 근무마다 최소 4일 이상 휴일 보장
- 최소 근무일수: 계약기간의 75% 이상 보장(3개월 68일 이상 5개월 113일 이상 고용보장)
- 임 금: 최저임금* 이상 지급 * 2023년 => 9,620원*209시간=2,010,580원
- 지급방법: 월 1회 근로자 명의 통장 지급
- 근무지 이동제한: 최초 계약한 농가 작업장에서만 근무 가능
- 숙 식: 배정받은 고용주가 제공
 - 근로자 통상임금의 최대 17% 초과 징수 금지
- 산재보험: 고용주 의무가입
- 의 료 비: 근로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
 - 근로시간 이외 발생한 상해 치료비는 근로자 본인 부담
 - 코로나19 등 질병 감염에 따른 발생비용은 고용주, 근로자 50% 씩 부담
단,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성 질병에 감염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,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음. 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34 조에 따름)

□ 근무처 이동 제한

-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대상 농가의 농경지에 한하여 근무 가능하고 다른 농가에 근무 금지
-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「출입국관리법」 제94조에 따라 처벌대상임

□ 불법체류 방지 및 인권 보호

- 불법체류자 방지
 -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작업장이나 소재지를 이탈하여 불법 체류하지 않도록 관리
 -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
- 근로자 인권 보호
 -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통역 및 폭력(언어폭력 포함), 폭행, 성희롱 성폭력 등 인권침해 파악
 - 외국인 종합안내센터(국번 없이 1345)를 통하여 피해 구제
- 불법체류자 또는 인권침해 조치사항
 - 해당 지자체 및 고용주 별점 부과로 배정 인원 삭감
 - 인권침해 발생 시 해당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가해자와 즉시 분리

□ 고용주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

- 계절근로자 근무처 무단 이동 및 변경 금지
 -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
- 계절근로자 허위 추천 시 - 결혼이민자의 계절근로자 추천 영구 배제
- 추천한 가족이 무단 이탈 시 - 향후 계절근로자 추천 불가

□ 향후 추진계획

- 외국 지자체(외국, 중앙부처)와 MOU체결 : 2022. 11.
-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근로계약서 등 구비서류 제출
- 운영 계획 수립 및 법무부 승인요청 : 2022. 12
- 사증발급인정서 신청(함안군→출입국관리사무소) : 2022. 12. ~ 2023. 1.
- 사증발급 승인(출입국관리사무소→함안군) : 2023. 1.
- 사증발급 신청(계절근로자→재외공관) : 2023. 2.
- 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농가근무 : 2023. 3.

□ 제출서류

-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(고용주 및 결혼이민자의 가족·친척)
- 본국의 가족관계증명서(결혼이민자의 가족·친척)
- 계절근로자 숙소점검 확인서(고용주)
- 표준근로계약서(고용주)
- 주민등록 등본,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(미제출 시)

붙임 1.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(결혼이민자의 가족·친척) 1부.

2. 계절근로자 숙소점검 확인서 1부. 끝.

[붙임 1]

계절근로 참여 신청서(결혼이민자의 가족·친척)

(SEASONAL WORKER APPLICATION FORM, 外籍季节性工人应聘申请书)

신청자(APPLICANT, 申请人)

성명 Name 姓名	국적 Nationality 国籍	성별 Gender 性别	[]남(男) []여(女)
생년월일 Date of Birth 出生日期	직업 Occupation 职业		
본국 주소 Address In Home Country 本国地址	연락처 Phone No. 联系方式		

계절근로 신청 지역 및 기간 (DETAILS OF SEASONAL WORK, 欲工作地区和欲工作时间)

희망 근로지역 (欲工作地区) (Desired Place of Seasonal Work)	○○사·군
희망 근로기간 (欲工作时间) (Desired Period of Seasonal Work)	2021. 4. 1. ~ 2021. 8. 1.

추천자(DETAILS OF RECOMMENDER, 推荐人)

성명 Name In Full 姓名	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Registration No. 韩国外国人登记号或居民身份证号
연락처 Phone No. 联系方式	신청인과의 관계 Relation to applicant 与申请人关系

본인은 _____ 년도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합니다.

I hereby apply to work as a Seasonal Worker in year _____.

本人特此申请参加大韩民国_____年度外籍季节性工人项目。

신청일자 Date of Application 申请日期	신청자 Applicant 申请人	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签或章

계절근로자 숙소점검 확인서

- ____ . __ . __ .부터 ____ . __ . __ .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거주 예정 숙소를 자체 점검한 결과, 「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」에서 정한 숙소의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- 사증 심사, 합동 점검 등을 통해 비닐하우스, 컨테이너 등 부적격 숙소가 발견될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삭감·제외 등 불이익에 대해 안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
※ 붙임 : 계절근로자 숙소별 점검확인서 ○○부

년 월 일

○○시·군청 (직 인)